

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577
------	-----

2019. 4. 29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3월 29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3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】

-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(2019. 4.25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심사보류)
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19. 4.29) 상정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Ⅱ . 제안설명의 요지(서울특별시장)

1. 제안이유

- 2019.1.1.字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서명칭을 반영하고,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“심신장애”라는 표현이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며, 지방보조사업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(“제로페이”)을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간사를 “재정관리담당관”에서 “재정균형발전담당관”으로 변경함(안 제10조제5항).
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“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”를 “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”로 변경함(안 제14조제1호).
-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추가함(안 제26조제2항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조직개편(2019.1.1)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반영하고, ‘장애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변경하고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해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의 명칭을 반영(안 제10조제5항)

- 안 제10조제5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간사를 “재정관리담당관”에서 “재정균형발전담당관”으로 변경하고 있음.
- 이는 서울시 조직개편(2019.1.1)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부서의 명칭과 기능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.
- 다만 조직개편과 연관된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지 않고 시차를 두어 담당부서 명칭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기 어려움.

다. ‘장애’ 해촉사유의 개선(안 제14조제1호)

- 안 제14조제1호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

“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”를 “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”로 변경하고 있음.

- 이는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¹⁾과 유엔의 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²⁾(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)”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임.
- 정부는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을 개정(2016.2.3.)하면서 인권위원의 퇴직이 가능한 요건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한 바 있음³⁾.
-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역시 ‘장애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[참고자료1].
- 장애의 유무를 일상적인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연계해 판단하는 것은 자칫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

1)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차별금지)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) 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” 제29조(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) 나.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,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

- ① 국가의 공적·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
- ② 국제적, 국내적,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

3) 인권위원이 ‘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’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로 퇴직할 수 있다는 제8조가 신체적·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인권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석될 수 있어 개정안과 같이 ‘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’로 개정하였음.

입법취지는 타당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.

라.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제로페이 추가(안 제26조제2항)

- 현재 지방보조금은 보조금관리통장과 연결된 결재전용카드(체크카드)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예외적으로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좌입금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음.
- 안 제26조제2항은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이하 “제로페이”)을 추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- 소상공인의 과도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출발한 제로페이를 지방보조금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그러나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, 계좌이체가 2,365억 6천 3백만 원으로 총액의 85.8%를 차지하고 있고, 체크카드는 316억 3천 4백만 원으로 보조적 수단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
〈2018년 서울특별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〉

(단위: 백만 원)

구 분	집행 금액			
	소계	카드	계좌이체	기타
총 계	275,820 (100%)	31,634 (11.5%)	236,563 (85.8%)	7,623 (2.7%)
시	193,951 (100%)	13,710 (7.1%)	174,047 (89.7%)	6,194 (3.2%)
자치구	81,869 (100%)	17,924 (21.9%)	62,516 (76.3%)	1,429 (1.8%)

※ 주 : 국고보조와 사후 정산형·급여형을 제외한 전액 시비보조사업 집행 현황임.

- 이처럼 계좌이체가 대다수인 지방보조금 집행에 제로페이 이용을 강제화하는 것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경감이란 정책적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.

- 한편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, 출자·출연 기관, 민간단체 등의 제로페이 이용을 위해 「제로페이Biz」⁴⁾시스템을 구축하여, 2019년 4월 15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음.

- 이들 기관·단체들이 「제로페이Biz」를 통해 제로페이를 이용하려면, 금융결재원을 통한 가맹점 통보, 집계·정산 등을 갖춘 '제로페이 플랫폼'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.

- 그러나 플랫폼 사용승인권자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시가 구축한

4) 법인용 제로페이

「제로페이Biz」 시스템이 결제와 동시에 출금이 이뤄지지 않아 ‘직불 전자지급수단’⁵⁾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이유로 플랫폼 사용을 불허한 바 있음(2019.3.19.).

- 현재까지도 금융위원회는 결제일(당일) 24시까지 출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「제로페이Biz」를 ‘직불전자지급수단’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바, 지출결의서 작성, 결제, 지출 등이 당일 24시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「제로페이Biz」를 철저히 운영해야 할 것임.
-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민간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한하여 「제로페이Biz」 이용허가를 받았다고는⁶⁾ 하나 현재까지 확인된 공문은 없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5)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(정의) 13. “직불전자지급수단”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(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)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.

6) 서울시는 금융결제원의 e-mail 통보를 근거로 하였다고 밝혔으나 금융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공문은 없음.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7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19. 1. 1.字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서명칭을 반영함
- 나.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“심신장애”라는 표현이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
- 다. 지방보조사업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을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간사를 “재정관리담당관”에서 “재정균형발전담당관”으로 변경(안 제10조제5항)
- 나.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“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”를 “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”로 변경(안 제14조제1호)
- 다.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추가(안 제26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2, 제32조의3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2. 21. ~ 3. 13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 중 “재정관리담당관”을 “재정균형발전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호 중 “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”를 “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”로 한다.

제26조제2항 본문 중 “보조금 결제 전용카드(체크카드)를”을 “보조금 결제 전용카드(이하 “체크카드”라 한다)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카드사용”을 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위원회 설치)</p> <p>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재정관리 담당관</u>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.</p>	<p>제10조(위원회 설치)</p> <p>⑤ ----- ----- <u>재정균형발전 담당관</u> ----- -----.</p>
<p>제14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</p> <p>2. ~ 3. (생략)</p>	<p>제14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u>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6조(지방보조금의 집행)</p> <p>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<u>보조금 결제 전용카드(체크카드)</u>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</u>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.</p>	<p>제26조(지방보조금의 집행)</p> <p>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<u>보조금 결제 전용카드(이하 “체크카드”라 한다)</u> 또는 <u>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을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</u>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을 반영하고,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“심신장애”라는 표현이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, 지방보조사업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을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안 미 희 (02-2133-6855)